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 11. 15 선고 2024가단11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0. 3.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23. 7. 31. 접수 제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용

별지